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제 회)	

재 해 경 감 을 위 한 기 업 의 자 율 활 동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 인증제도 관련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증 규제 개선방안」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우수기업 인증만료 시기 본격 도래에 따른 인증 연장 처리 절차 개선 및 인증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중간 점검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우수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안 제7조 제3항)

-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함

나.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 처리절차 보완(안 제7조 제4항, 제5항, 제6항)

- 우수기업 최초 인증 후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기가 본격 도래함에 따라 기업의 인증연장 준비기간과 연장 신청 후 업무 처리기간을 확보하고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증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기존 60일 전에서 120일 전에 통보하도록 개정하고, 인증만료일 60일 전까지 인증연장을 신청하도록 개정하도록 함.

다. 인증 중간점검 제도 도입(안 제7조의2)

- 현행 법 제7조 따라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 평가기준 충족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우수기업 인증 후 2년이 되는 해 중간점검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현행 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함.

라. 인증대행기관 지정 유효기간 도입(안 제9조 제3항, 제4항)

- 현행 법 제8조의2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지정 이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보유 등의 지정요건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연장신청 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사후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홈페이지”를 “홈페이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3년”을 “4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60일”을 “1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절차”를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한다.

⑤ 우수기업이 유효기간 후에도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증대행기관에 인증 연장신청을 하여야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증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인증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인증 중간점검) ① 우수기업은 영 제5조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을 유지하는 지에 대하여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2

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날 전까지를 말한다) 중간점검을 받아야 한다. 단,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증 연장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중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증대행기관을 통해 중간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 중간점검을 위하여 인증 및 인증연장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중간점검 대상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 영 제5조의 우수기업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우수기업 중간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지정 등”을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등”으로 한다.

③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4년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 지정 이후 4년마다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기간 연장 시 법 제8조의2에 따

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인증대행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중 ““주관연구기관””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주관연구기관”을 각각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인건비, 재료비, 전산처리비, 시험제품제작비”를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로,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직접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주관연구기관”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용도 외로 사용한 출연금 금액만큼”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후단 중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횟수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을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 “후의 재적발일”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후단 중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을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 “후의 재적발일”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

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5 제1호나목 후단 중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을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 “후의 재적발일”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는 영 제7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 유효기간을 종전의 규정대로 3년으로 적용하며 제7조의2 중간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영의 시행 이후 제7조 제5항에

따라 재인증을 받을 경우는 개정된 영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 또는 시행 당시 인증 연장을 이미 신청한 기업의 경우 그 유효기한에 대하여 제7조 제6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결과 통지 시까지 그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우수기업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기업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이하 “우수기업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u>홈페이지</u> 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기업 인증 등) ① ----- ----- ----- ----- ----- <u>홈페이지</u> 등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u>3년</u> 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새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 ----- --- <u>4년</u>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u>60일</u> 전에 우수기업 인증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 ----- ----- --- <u>120일</u> ----- ----- -----.

<신 설>

<신 설>

⑤ · ⑥ (생 략)

⑥ 그 밖에 우수기업 인증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⑤ 우수기업이 유효기간 후에도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증대행기관에 인증 연장신청을 하여야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증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인증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⑦ · 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⑧ -----
-----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 -----
-----.

제7조의2(인증 중간점검) ① 우수기업은 영 제5조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을 유지하는 지에 대하여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날 전까지를 말한다) 중간점검을 받아야 한다. 단, 영 제7조제5항에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 ① .

② (생 략)

<신 설>

따라 인증 연장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중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증대행기관을 통해 중간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 중간점검을 위하여 인증 및 인증연장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중간점검 대상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 영 제5조의 우수기업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우수기업 중간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4년

<신 설>

③ 그 밖에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을 맺은 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 지정 이후 4년마다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시 법 제8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
-----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15조(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주관연구개발기관”-----
-----.

제16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등)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기업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
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
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2
4조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
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
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 재료비, 전산처리비, 시
험제품제작비 등 해당 연구개발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주관연구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
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
용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출연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주관연구개발기관-----

-----.

④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
----- 연구개발
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
는 비용(직접비)-----
--.

⑤ ----- 주관연구개
발기관-----

----- 용도 외로 사용
한 출연금 금액만큼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예방안전제도과	
연 락 처	044-205-4518